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및 구비서류) 계약목적은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1.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2. 질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1부
3. 법정전염병 검사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7.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 1부
8.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해당자)
9.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급여증명서 사본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①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의한다.
- ②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부담액은 급여계약서에 의한다.
 1. 식재료비 및 간식비
 2.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시설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④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급여제공계획 확인
 1.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 공개 요구
-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1.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4.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가 사망한 때
 2.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3.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사정으로 연속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8. 입소자의 적응을 위해 최초 입소 시 1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며, 시설 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②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